

# 民間企業의 自主的 技術開發을 促進

## 技術開發促進法 11日閣議서 通過

經濟의 高度成長에 따라 增大하는 技術需要는 大體로 自體技術開發과 先進外國技術의 導入으로 充當되고 있다. 特히 技術開發은 生産性向上과 原價節減을 通하여 企業의 利潤을 增大시키고 資源의 效率의 利用을 可能하게 하므로 이는 企業뿐만 아니라 國家의 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다.

오늘날 跳躍段階에 들어선 우리나라 經濟의 持續的인 成長과 輸出商品의 國際競爭力을 強化하기 爲하여는 適正한 先進技術을 果敢히 導入하여 그것을 消化·改良하고 아울러 自主的 技術開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課題를 解決하기 爲하여는

첫째, 企業家는 製品의 質을 向上시키고 새로운 製品의 開發을 促進할 技術開發投資에 積極的인 關心을 보여야 할 것이며,

둘째, 關係當局은 民間의 自主的인 技術開發活動을 助成하기 爲한 法的 制度的 其他 多角的인 支援體制를 講究하여야 한다.

가까운 日本의 例를 보면 産業技術開發을 積極推進하기 爲하여 國產技術振興 資金融資 事業 및 試驗研究者에 對한 補助金等 金融支援과 增加 試驗研究費에 對한 稅額 控除 및 新技術企業化用 機械設備等의 特別償却等 二十餘種의 各種 稅制上의 惠澤을 주고 있으며, 그밖에 新技術開發産業團의 設置로서 新技術의 企業化를 爲하여 資金補助 및 普及事業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拂蘭西의 境遇 石油類輸入에 關하여 特히 最近에 改正한 法令(1971年 2月 26日 字 法令第 71-158)에서 石油類輸入認可取得者로 하여금 그들이 販賣한 量에 比例하여 IFP(佛石油研究所)責任下에 遂行하는 研究開發 教育 및 施設投資를 爲한 諸費用을 分擔도록 第11條에 規定하고 있는 한편, 同 IFP 支援을 爲한 財源을 石油類 消費附加稅로서 充當시킬 수 있도록 1954年 6月 11日 字 法令으로 規制한 後 數次의 稅率調整을 거쳐 現在는

1969年 10月 2日 字 法令으로서 다음과 같은 稅率을 適用하고 있다.

휘발유 및 항공유 100리터當 0.18FF  
(約 14원)

산업용 프로판가스 톤 당 12.50FF  
(約 1,000원)

가정용 연료유 톤 당 1.80FF  
(約 144원)

石油 100kg 0.50FF(約 40원)

科學技術處는 技術開發을 보다 效果的으로 誘導 促進할 수 있게 하기 爲하여 技術開發促進方案을 마련하였다. 科學技術處가 立案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친 技術開發促進法(案)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주요골자>

가.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자가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기술도입대가의 일정율을 적립 사용한 때에는 조세 자금면에서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나.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기술에 의한 국산화가 가능한 물품을 수입한자가 그 수입액의 일정율을 수입물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사용한 때에도 조세자금면에서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정부는 제3조 및 제5조에 규정하는 이외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의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조세 자금면의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연구용역계약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한 공업소유권이 산업발전에 특히필요한 때에는 그 용역의 수행자에게 이를 무상 양여하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당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사용된 연구기기 설비 및 연구개발의 성과인 시제품등도 연구용역수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산업기술의 개발과 적성기술의 도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기술개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내지 제15조)

### 기술개발촉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을 촉진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2. "기술개발준비금"이라 함은 기술개발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준비금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①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1.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자.
2.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도입계약에 부수하여 기술을 도입한 자.
3. 전 각호이외의 방법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을 적립 신고한 자에 대

하여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한다.

**제 4 조(준비금의 사용)** ① 전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는 적립한 준비금을 기술개발에 충당하는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준비금의 사용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수입업자의 기술개발)** ① 정부는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기술에 의한 국산화가 가능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액의 일정율을 수입물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가 가능한 물품 및 기술개발에 사용할 수입액의 일정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제 3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 사용하는 자 및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을 행하는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기 저리자금중 일부를 기술개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 7 조(조세상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을 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 감면 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 8 조(기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제 3 조 내지 제 5 조에 규정하는 이외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기술개발을 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9 조(기술정보 지원등)** 정부는 기업이 기술개발 기타 기업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10 조(정부의 공업소유권등의 사용특례)**

① 정부가 위탁하는 연구용역 계약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한 공업소유권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용역의 수행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공업소유권을 양여하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정부가 위탁하는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용역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기기 설비 및 시작품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 11 조(사후관리)**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 3 조 제 5 조 제 8 조 및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업무 처리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위원회의 설치)** 산업의 기술개발과 적정기술의 도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기술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3 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14 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및 그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수입업자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5 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6 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7 조(벌칙)** ①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또는 조사 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

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전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18 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9p.에서)

함인영(임기 3년)

Dept of Industrial Engr.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Pa. 16, 802  
(814) 865-7601

김명환(임기 1년)

School of Electrical Engr.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14, 850  
(607) 256-3, 467

이해섭(임기 2년)

Dept. of Electrical Engr.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Pa, 16, 802  
(814) 865-6, 337

최순달(임기 2년)

Jet Propulsion Lab.  
Calif. Inst. of Technology  
Pasadena, Calif. 91, 103  
(213) 354-5, 508

김육동(임기 1년)

Dept. of Engineering Science  
Cooper Union  
New York, N. Y.  
(212) 254-6, 300

박찬모(임기 3년)

Computer Science Center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207-42  
(301) 454-4, 527

## 감 사

이 동 념

Naval Research Laboratory  
Washington, D.C. 20, 390  
(202) 767-2, 705

장 혜 원

Dept. of Neurology  
Columbia University  
630 W 168th Street  
New York, N. Y. 10, 032  
(212) 579-4108